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단5166051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7. 8. 17.

판결 선고2017. 10. 12.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17,479원 및 그 중 89,044,281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6. 3.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9. 접수 제546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D 대표자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9,9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1억 1,000만 원을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최종적으로 2015. 8. 20.경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한이 2016. 8. 19.로 변경되었고, 이후 피고 A의 신용보증부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6. 4. 12. 국민은행에게 2016. 4. 11.자 신용보증부실 발생통지를 하였으며 2016. 7. 5.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89,330,771원(= 원금 8,800만 원 + 이자 1,330,7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채무는 2016. 7. 5. 현재 90,517,479원(= 대위변제원리금 89,330,771원 - 회수금 286,490원 +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78원 + 대지급금 1,473,120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피고 A가 대표로 있던 D는 갈탄 등과 난로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년 1월과 2월에 납품한 난로대금 9,647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A는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6. 3. 2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9. 접수 제54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 지급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채무 90,517,479원 및 그 중 원금 89,044,281원(= 대위변제원리금 89,330,771원 - 회수금 286,49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7. 1.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2016. 3. 29.경에는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일로부터 2주일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 A의 신용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피고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물품대금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와에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위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측에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난로 공급을 부탁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기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고 추가로 피고 A측에게 난로를 제공하였기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 C은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물변제 이후 피고 C에 D에 공급한 난로대금이 280만원(부가세 별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옳고(피고 A가 새로 공급받은 난로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한 이상 기존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이 사건 아파트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A에게 기존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여현주

별지